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799

제출연월일: 2021. 8. 19.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군복무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제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내용 규정(안 제4조)

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3. 근거법규: 「병역법」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예산담당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6020호, 2021. 7. 2.)

라. 입법예고: 2021. 6. 28. ~ 7. 19.(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청년이 군복무 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 거 법 규

□ 「병역법」

제16조(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 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

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1.30]]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1.30]]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1.30]][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내용)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상자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5,000만원 보장 등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5년

라. 방법

-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대상자는 부산지방병무청 입대자 자료를 준용하여 1,600명으로 가정
- 2021년 1월부터 5월간 월 평균 92명 입대 × 18개월
- 상해보험 단가는 경기도 사례를 준용하여 45,000원으로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군복무 청년 상패보험료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0
	소계(b)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0
총비용(a-b)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비용요소

-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360,000천원

- 연간비용 ≒ 72,000천원

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 360,000천원

- 5년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 $\sum_{i=1}^{5}$(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비용 ≒ 1인당 보험단가 × 대상자수

≒ 45,000원 × 1,600명 ≒ 72,000천원

· 1인당 보험단가 : 45,000원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단가 준용('21. 1. ~ '21. 12, 12개월 계약분)

· 대상자수 : 1,600명

※ 2021년 1월부터 5월간 월 평균 92명 입대 × 18개월로 산정

1. 부대의견: 해당없음.

2. 협의사항: 해당없음.

3. 작 성 자: 일자리기업과 정순찬(290-4453)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구 비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0
합 계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예산담당 협의)

5. 작성자

○ 소 속: 일자리기업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정순찬

○ 연 락 처: 052-290-4453

[참고]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내용(2021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장 안내

보장항목	보장내용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만원 보장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5,000**만원 보장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000**만원 보장
질병후유장해(80%)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보장
상해/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3**만원 보장
골절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30**만원 보장
화상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30**만원 보장
뇌출혈 진단금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 진단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비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5**만원 정액 보장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 보장